

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, 인허가 과정,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,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,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 청약자격 미숙지,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기관추천 특별공급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36조
전용면적 85㎡ 이하 공급세대수의 10% 이내

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,

- ①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(단,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함.)
- ②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, 지역별 /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(*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입주자 저축 불필요)

추천기관

구분	해당기관	청약통장 구비여부
장애인	충청북도청 노인장애인과	청약통장 필요 없음
국가유공자 등	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	
장기복무 제대군인	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	입주자저축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
10년 이상 복무군인	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	
중소기업 근로자	충청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	

당첨자 선정방법

-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된 자
 - 당첨예정자: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·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자
 - 예비대상자: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·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
-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
-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,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유의사항

-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 **[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(동·호배정)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]**
-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